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일, 진중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진중오의원)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1)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수사·조사 시 체육단체 징계 중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나. 검토의견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체육단체의 재량으로 우선 징계처분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중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셀프 징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률에 따라 고발과 징계요구의 권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조사·수사와 징계의 일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각 징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신속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셀프 징계 등의 우려가 없고 폭력, 아동학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위행위자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나, 보완요구, 재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을 보고 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의 서면 통지 등 일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밖의 체육단체의 임원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징계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4항 신설)

나. 검토의견

최근 민간 체육단체의 징계처분 지연이나, 부적정한 징계 경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실주의(혈연·학연·지연 등)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 독립성 강화, 징계관할권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지정, 위원 구성 추천 할당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맹단체 임원 등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관할권을 갖게 될 예정임.

개정안과 같이 체육단체의 징계권한을 상급단체가 갖도록 할 경우

징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체육 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해 상급기관이 징계요구권 등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②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스포츠 공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관할권 상향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③ 대한체육회 임원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징계권한을 법에 명시할 경우,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율성 보장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조은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